

<서면답변서>

○ 안기영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호 농림수산위원회 2004. 11. 22)

(질 의)

- 경기도의 '03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한 32,457천원으로 전국 최대이나 이중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통계청의 '03년 농가경제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농가소득은 '02년보다 1,707천원 증가된 32,457천원으로 이중 농업소득은 9,166천원으로 전체의 28%이며 농외소득은 23,291천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외소득의 경우 전년에 비해 3,810천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10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농업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03년 잦은 강우와 태풍매미로 인한 일조량의 부족과 작황불량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또한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에 의한 농산물가격 하락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주5일제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의한 음식, 민박, 체험비 등에 의해 농외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의)

- 2005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4년도 유가상승, 내수부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최근 지방세가 전년동기 대비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2005년도에도 지방세 수입의 성장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 전체 세출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농정국의 농정예산의 자체사업 예산도 금년도 456억 원에서 2005년도에는 234억 원으로 49%가 삭감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829억 원에서 2005년도 본예산액은 711억 원으로 1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답변드리며 향후 도의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농정예산도 점차 증액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도 자체 예산투자가 미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이 아직까지는 흡족한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 북부지역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03년도 1,156ha에서 '04년도 1,544ha로써 388ha가 증가하였으나 총 재배면적의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벼(1,266ha) : 오리농법 250ha, 활성탄 220ha, 기타 796ha
 - 채소류(278ha) : 과실류 133ha, 채소류 134ha, 기타 11ha
 - ※ 경기도 : 7,464ha(벼 5,747ha, 채소류 등 1,717ha)
-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친환경 농산물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 2005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천군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고양시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 자체 사업으로는 오리농법 지원 71ha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799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비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연천군 323백만원
 -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 고양시 21백만원
 - 도자체지원사업
 - 오리농법지원 : 71ha 85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 799농가 125백만원
-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도자체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 목초액, 활성탄 농법, 동력중경제초기, 규산질비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고자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생산단지 조성 : 740ha 785백만원
 - 목초액, 활성탄농법 지원 : 1,500ha 510백만원
 - 동력중경제초기 지원 : 100대 100만원
 - 규산질 비료공급 : 2,150ha 430백만원
-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전문가, 농업인, 소비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 발전방향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계획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경지면적	ha	53,697	52,197	50,697	49,197
재배면적	ha(%)	3,220(6)	4,170(8)	4,560(9)	4,920(10)
생 산 량	천t	46	50	55	59
인증확대	ha	880	1,360	1,792	2,260

(질 의)

- 학교숲 조성사업의 경우 도심지역의 학교(특히 신설학교)가 숲이 부족한데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이유는?
- 공사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 녹화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지?

(답 변)

-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3년 10개교를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당 교육청, 학교장, 시·군이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학교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농촌지역에 집중 지원하거나 도시지역을 배제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지역의 경우도 녹지가 부족한 읍내 등 도시화된 학교에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는 숲이나 녹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의 인식부족과 학교 건설공사에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대상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숲이 부족한 도시지역 학교가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22개 학교로 이 가운데 16개 학교는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되었으며 3개 시·군 6개 학교(27%)가 해당 지역 산림조합 등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되었으나 3개 시·군 6개 학교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산림조합)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지역 산림조합 등과 계약하여 공사 발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또한 학교숲 조성에 있어 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운영실적 : 41회 383명(시·군당 평균 4회, 학교당 평균 17명)
 - 사업설명회개최실적 : 43회 807명(시·군당 평균 4회, 학교당 평균 37명)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 학교의 추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십 추진실적으로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 참여자는 약 230여명으로 4천본(73백만원)의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인별로 12~16본 정도로 현수, 기념식수 등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창회 등 학부모의 참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학교, 동창회, 학부모 등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 또한 경기비전 2006 역점사업인 「학교숲」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학교를 친환경적인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하여 녹지환경이 부족한 도시학교를 환경친화적인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주민의 휴식공간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호 농림수산위원회 2004. 11. 22)

(질 의)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시·군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와 꼭 농업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미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 광범위한 농경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 논 경지면적(29,617ha) 중 시·군 관리구역과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14,804ha)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의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열람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구역을 설정한다.
- 해당관리 구역에 대한 모든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사업비 교부는 시장·군수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농업기반공사와 시·군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도 북부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물량 31km 중 시·군 6km, 농업기반공사 25km에 대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20km 중 시·군 8km, 농업기반공사 12km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1	3,175	20	2,082	
농업기반공사		25	2,550	12	1,239	
시·군	소 계	6	625	8	843	
	가 평	2	208	1	104	
	연 천	4	417	2	208	
	포 천	-	-	5	531	